

지정의 취소 등 처분기준(제10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지정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정지 처분의 경우 위반행위의 수,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, 횟수, 위반의 정도 및 공익에 대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
가. 기탁등록보존기관, 책임기관,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2조 제1항제1호	지정취소			
나. 기탁등록보존기관, 책임기관,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7항, 제10조제5항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12조 제1항제2호	시정명령	사업정지 1개월	사업정지 4개월	지정취소
다. 기탁등록보존기관, 책임기관,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	법 제12조 제1항제3호	시정명령	사업정지 1개월	사업정지 4개월	지정취소

제8조제2항, 제10조제1항 · 제2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 이 수행하지 않은 경우					
---	--	--	--	--	--